공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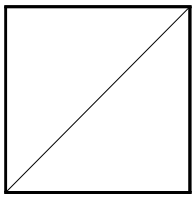

의안번호	제 305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8. 27. (서면 제5차)

의결사항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 연장 승인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8. 27.

1. 의결주문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승인요청한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 조치 연장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거래소가 승인 요청한「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 연장안」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에서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제한과 관련하여 6개월(’20.9.16～’21.3.15일)간 다음과 같이 특례를 인정함

	현행	특례
직접취득시	• 〔①과 ②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① 취득신고주식수의 10% ② 이사회결의일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 취득신고 주식수 이내*
신탁을 통한 취득시	•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	•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에서 취득가능한 주식수 이내*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내

※ 금융위 승인 후 9.16일부터 시행

(별지)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

□ **(대상법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

* 旣 자사주취득신고서(신탁계약체결신고서) 제출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 **(대상기간) '20. 9. 16 ~ '21. 3. 15일, 6개월간**

□ **(조치내용) 1일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수량한도**를 다음과 같이 **확대**

	현행	특례
직접취득시	• 〔①과 ②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① 취득신고주식수의 10% ② 이사회결의일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 취득신고 주식수 이내*
신탁을 통한 취득시	•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	•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에서 취득가능한 주식수 이내*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내

□ **(조치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및 제5-6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0조 및 제41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1조 및 제12조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5조 및 제16조

【별첨】

관 계 법 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한 매수주문의 방법) ①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1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수주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개시 전에 매수주문을 하는 경우 그 가격은 전일의 종가와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5 높은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하며, 거래소가 정하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매수주문(정정매수주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그 가격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매매거래시간 중 매수주문은 거래소가 정하는 정규시장이 종료하기 30분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삭제 2016.6.28>
   나. <삭제 2016.6.28>
2. 1일 매수주문수량은 취득신고주식수 또는 이익소각신고주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량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간의 일평균거래량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수량 중 많은 수량 이내로 할 것. 다만, 그 많은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로 할 것
3. 매수주문일 전일의 장 종료 후 즉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1일 매수주문수량등을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할 것
4. 매수주문 위탁 투자중개업자를 1일 1사로 할 것(자기주식 취득 또는 이익소각에 관한 이사회결의상의 취득기간 중에 매수주문을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는 5사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거래소가 정하는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정부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공정경쟁 촉진, 공기업 민영화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허가·승인·인가 또는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를 하고 금융위에 요청한 경우로서 금융위가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이 제5-4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한 때에는 제1항·제2항·제5-6조제1항의 규정은 각각의 이사회 결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5-6조(자기주식취득을 위한 매수주문의 특례) ① 거래소는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5-5조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1일 매수주문수량을 이사회 결의 주식수이내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이익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0조(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방법의 특례) ① 거래소는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중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수를 위탁받아 이를 호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가를 하는 경우 호가의 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제39조제1항 본문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장개시전에 호가하는 경우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격
2. 매매거래시간중에 호가(신규호가 및 정정호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에 의한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1조(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신탁매매방법 및 그 특례) 제3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40조의 규정은 회원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로부터 자기주식매매거래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신탁업자"로, "자기주식매수(매도)"는 "자기주식신탁매수(매도)"로 본다.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1조(자기주식취득을 위한 매수호가의 특례) ① 거래소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중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수를 위탁받아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가격으로 호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장종료 30분전 이후부터 장종료시까지는 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의 호가제출등) ① 회원이 제36조에 따라 신탁업자로부터 자기주식매매거래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10조 중 "주권상장법인"은 "신탁업자"로, "자기주식매매거래"는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로, "자기주식의 매도"는 "자기주식의 신탁매도"로 하며, 제11조 중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수"는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신탁매수"로 본다.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5조(자기주식취득을 위한 매수호가의 특례) ① 거래소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중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수를 위탁받아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호가가격으로 호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장종료 30분전 이후부터 장종료시까지는 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의 호가제출등) ① 회원이 제54조에 따라 신탁업자로부터 자기주식매매거래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14조 중 "주권상장법인"은 "신탁업자"로, "자기주식매매거래"는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로, "자기주식의 매도"는 "자기주식의 신탁매도"로 하며, 제15조 중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수"는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신탁매수"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55